

대구고등법원 2021. 10. 6 선고 2020나24961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대구고등법원 2021. 10. 6 선고 2020나24961 판결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20. 8. 20 선고 2019가합3827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A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희수

피고, 피항소인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중원

담당변호사 배주한, 박현민

변론 종결 2021. 8. 25.

판결 선고 2021. 10. 6.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20. 8. 20. 선고 2019가합3827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와 C 사이에 2016. 7. 15. 체결된 269,432,560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269,432,560원 및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당심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 기재 '당심 수정 부분'과 같이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심 수정 부분

수정 전	피보전채권의 가액은 합계 321,169,970원 [= 이 사건 어음 및 이 사건 제1수표 액면금 합계 235,331,750원(= 115,331,750원 + 120,000,000원) + 지연손해금 85,838,220원(= 235,331,750원 × 연 15% × (2 + 158일/366일))]이 된다.
수정 후	피보전채권의 가액은 합계 360,960,219원 [= 이 사건 어음 및 이 사건 제1수표 액면금 합계 235,331,750원(= 115,331,750원 + 120,000,000원) + 지연손해금 125,628,469원(= 235,331,750원 × 연 15% × (3 + 204일/365일))]이 된다.

수정 전	그러나 갑 제3, 9, 10호증, 을 제1, 2, 3호증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고려하면,
수정 후	살피건대, 갑 제3, 9, 10, 14호증, 을 제1, 2, 3호증, 제4호증의 1, 2, 3, 제5호증의 1, 2, 3, 제6호증의 1 내지 46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① 내지 ⑤ 기재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수정 전	② 이 사건 계좌에 대한 입금내역을 보면, 2016. 7. 15.부터 같은 달 21.까지 피고 명의로 30,000,000만 원이 입금된 것 외에는 피고가 금전을 입금한 내역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C과 ○이 금전을 입금한 내역만 존재한다. 그리고 위 3,000만 원도 C이 J으로부터 피고 명의 N은행 계좌로 입금받은 3,000만 원과 액수가 같고, 위 3,000만 원이 최종 입금된 2016. 7. 21. C의 보관금채권액(L의 추심금을 제외한 금액)과 동일한 299,432,506원이 출금된 점을 고려하면, 위 3,000만 원도 C이 입금하였을 여지가 있다.
수정 후	② C은 2016. 7. 15. 그 아버지 O을 통하여 이 사건 자기앞수표를 현금화한 269,432,506원을 이 사건 계좌에 입금하였고(을 제4호증의 1, 2, 3), 피고는 C의 지시에 따라, 2016. 7. 15.부터 2016. 7. 21.까지 합계 3,000만 원을 이 사건 계좌에 입금하고, 2016. 7. 21. 이 사건 계좌에서 299,432,506원(이 사건 자기앞수표

수정 전	② 이 사건 계좌에 대한 입금내역을 보면, 2016. 7. 15.부터 같은 달 21.까지 피고 명의로 30,000,000만 원이 입금된 것 외에는 피고가 금전을 입금한 내역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C과 ○이 금전을 입금한 내역만 존재한다. 그리고 위 3,000만 원도 C이 J으로부터 피고 명의 N은행 계좌로 입금받은 3,000만 원과 액수가 같고, 위 3,000만 원이 최종 입금된 2016. 7. 21. C의 보관금채권액(L의 추심금을 제외한 금액)과 동일한 299,432,506원이 출금된 점을 고려하면, 위 3,000만 원도 C이 입금하였을 여지가 있다.
	269,432,506원 + 위 3,000만 원)을 자기앞수표 1장(수표번호 R)로 출금하여 C에게 전달하였다(갑 제14호증, 을 제1호증).C은 위 자기앞수표를 그대로 보관하고 있다가, 2016. 10. 31. 다시 피고의 계좌로 입금하였는데(을 제5호증의 1, 2, 3) 위 자기앞수표 금액 299,432,506원은 C이 J으로부터 수령한 보관금채권 중 L의 추심금을 제외한 금액과 일치하고, 2016. 7. 15.부터 2016. 10. 31.까지 위 입출금 이외에는 이 사건 계좌의 다른 거래내역이 없다. 2016. 11. 1.부터 출금된 돈은 뒤에서 보는 것과 같이 C이 사용하였고, 각 출금전표는 피고가 아닌 C이 작성하였다(을 제6호증의 1 내지 43).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진성철

판사권형관

판사김규화